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회적 금융 정책 요구안

2022. 1. 17.

사회적금융포럼

www.socialfinance.kr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며

차기 정부는 코로나19 재난을 마무리 짓고 파괴된 삶의 자리마다 치유와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예감하는 문명사적 전환기에, 규모와 속도에 휩쓸려 이리저리 내몰리지 않고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되어 뿔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 경제입니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이해관계자 포괄 원칙으로 사회 곳곳의 난제를 극복하며 공정하고 인간적인 경제를 실현해 갑니다. 그간 사회적 경제는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과정에 연대의 가치를 옹호하고 실천하면서 안전망 확충, 일자리 보존, 지역사회 재건에 기여해 왔습니다. 기성 질서에서 벗어난 공간에서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키워 온 다양한 모델들은 달라진 세상에 필요한 혁신의 씨앗입니다.

사회적 금융은 경제 질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 대안을 확산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변화를 촉진하는 금융의 힘은 주류 경제를 뒤흔드는 ESG 열풍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사업과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고 순환시키는 사회적 경제 방식의 금융입니다.

2018년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이 시행된 이래 사회적 경제 조직 대상 자금공급은 일정 부분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 투자자와 전달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정책금융 인프라에 의존하는 정책은 협동조합-비영리 법인에 대한 접근성 제약, 인증 사회적 기업 기피, 성장자금 및 프로젝트 자금 공백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전환기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경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해서는 목적에 충실한 자원 마련과 사회적 경제 원리를 구현할 수 있는 전달 체계 혁신이 필요합니다. 공공이 주도하여 사회적 금융을 위한 마중물 자금을 공급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연대금융 활성화, 시민 투자자 육성 등으로 공공민간의 사회투자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적 금융의 혁신 기제를 뒷받침할 인프라 조성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금융 기관들은 대전환 과정에서 풀뿌리 주체들의 주도적 대응 역량에 투자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누구나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껏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혁신의 맹아를 발굴하고 임팩트를 증폭시키는 동반자로 활동하며 관성을 부수고 한계를 뛰어넘는 성숙한 사람들의 공동체, 지속 가능한 세상으로 이행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3대 전략 · 4대 과제》를 제시합니다.

2022. 1. 17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3대 전략 · 4대 과제

추진 전략

- 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전용기금 조성
- ②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 ③ 사회적 금융에 적합한 새로운 자금공급 방식 개발

과제 1 사회적 금융 마중물 자금 공급

- ① 공공 재정·기금을 활용해 사회적 금융 마중물 자금 3천억 원 조성
- ② 민관 공동 출자로 '사회투자 모태조합' 결성 지원
- ③ '중진기금' 투융자 예산의 3%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통해 집행

과제 2 사회적 경제 방식의 연대금융 활성화

- ① 사회적 경제 기업 지역, 업종, 분야별 자조기금 육성
- ② 노동공제, 자활공제, 생협공제 등 시민공제 활성화
- ③ 신탁 등 상호금융 기관의 사회적 금융 참여 장벽 제거

과제 3 공공·민간의 사회투자 참여 촉진

- ① 사회투자조합 결성 허용 등을 통한 민간 중개기관 육성
- ② 공공기관의 사회투자 참여 촉진
- ③ 벤처자선 방식 사회투자 참여를 위한 행정편의 제공
- ④ 사회투자 참여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과제 4 사회적 금융 혁신 성장 지원

- ①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법 제정 및 기금 조성
- ② 소셜 택소노미 제정으로 ESG 투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력 제고
- ③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을 전담할 「사회적금융진흥원」 설립

과제 1. 사회적 금융 마중물 자금 공급

- **(관련 현황)** '18~21년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 시행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확대되었으나 제도 기반이 불비한 상태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금융 인프라를 사회적 경제 조직 대상으로 가동하는 방식으로 지원
 - '20년 국내 사회적 금융 공급 규모는 약 5,500억 원으로 추정되며, 3년간 연평균 80%씩 성장
 - (1) 정부 보증에 기반한 시중은행 대출 활성화, (2) 중소기업 정책금융 접근성 향상, (3) 모태펀드 통한 자본시장 연결로 전반적인 자금 공급 증가
- **(문제점)** 전달 체계의 한계로 자금 공급 사각지대 노출, 부문·지역 간 불균형 야기, 정책 효과 저하
 - '18년 이후 모태펀드 출자로 30여 개의 임팩트 펀드가 조성되었으나, 벤처투자조합 및 PEF 형태의 펀드는 상장목적 주식회사 법인격에 맞춰 발달된 투자수단으로 협동조합이나 비영리법인 접근 불가
 - 주식회사 법인격을 가진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도 배당 제한 조건을 이유로 투자 기피, 임팩트 투자의 대부분이 신생 소셜벤처에 집중
 - 사회서비스(의료, 돌봄 사회적협동조합) 및 제조(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 사회주택 및 재생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자금 사각지대 존재
 - 수도권과 지방, 부문 간 자금공급 불균형 및 공급방식 획일화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책 간 불일치로 인해 효과성이 저하되고 있음 (주민참여 거버넌스, 이익 공동체 귀속 등을 위해 정부 정책 대상으로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조직이 선호되지만, 성장 단계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 영세화, 자생력 저하)
- **(추진 방향)** 공공에서 휴면예금 등을 활용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자금을 마련하고, 공공 재원에 민간 자금을 혼합해 규모 있는 도매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사회투자 모태조합' 결성 지원, 중소기업 자금 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정책 효과 제고

《과제 1-1》 정부의 일반재정 투입과 더불어 휴면예금 등을 활용해 사회적 금융 마중물 자금 3천억 원 조성

- 현재 사회적 금융 정책은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음. 금융위원회 산하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계정'을 '사회적금융 지원계정'으로 변경하고,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에 본격적으로 활용
- 서민금융진흥원이 관리하는 휴면금융자산의 15%를 '사회적금융 지원계정'에 할당해 투융자를 위한 마중물 자금으로 활용하고, 복권기금 등 정부 출연금 배정 또는 금융권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 한시적 기부 등을 통해 위험 흡수 장치 확보 → 총 3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금융 마중물 자금 조성
 - (휴면금융자산 할당) '20년 기준 휴면예금 관리자산 약 1조 3,500억 원 × 15% = 2천억 원
 - (위험흡수 장치 마련) 복권기금 연간 출연금 2천억 원 × 10% * 5년 = 1천억 원
또는 금융권 연간 신용카드 포인트 소멸액 1천억 원 × 20% * 5년 = 1천억 원

《과제 1-2》 민관 공동 출자로 '사회투자 모태조합' 결성 지원

-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재원을 개발하여 민관 협력 방식으로 도매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중개기관에 자금을 공급하는 '사회투자 모태조합' 결성 지원

- 사회적경제위원회 등의 검토를 거쳐 마중물 자금 운용을 전담할 도매기금 운용기관 지정
- 도매기금 운용기관이 정부 마중물 자기에 민간 자원 등을 혼합해 공급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사회투자 모태조합’ 결성 지원
 - 출자 방식으로 규모 있는 민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 정부 마중물 자금 3천억 원에 민간 출자 2천억 원 결합, 총 5천억 원 규모 모태조합 결성
- 기존 사회적 금융 정책의 사각지대와 공급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고, 정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달 체계 혁신
 - 마이크로크레디트, 공제조합, 신탁, 벤처자선,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P2P금융, SIB운용기관 등 다양한 유형과 형태의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에 출자, 용자, 투자, 위탁 등 적합한 형태로 자금 공급

《과제 1-3》 ‘중진기금’ 예산의 3%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통해 집행

- 현재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진기금)’ 일부가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
 - ’21년 중진기금 예산 규모는 약 10조 원이고, 투융자 예산은 6.2조 원 (용자 5.5조, 출자 0.7조)
 - 현재 연간 약 2천억 원을 사회적 경제 조직에 공급 (중진공 용자, 모태펀드 출자, 임팩트 보증 등)
- 중진기금 투융자 예산의 3%에 해당하는 자금을 ‘사회투자 모태조합’에 출자하여,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현장에 공급
 - (공급 규모) 연간 6~7조 원 × 3% ≒ 연간 2천억 원 → 5년 간 1조 원
 - (용자형 중개기관) 마이크로크레디트 기관, 공제조합, 벤처자선 재단, P2P금융 플랫폼
 - (투자형 중개기관) 액셀러레이터, 벤처캐피탈, 자산운용사,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SIB 운용기관

※ 입법 과제

- (과제 1-1)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서민의 금융 생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통해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20.7월)
- (과제 1-2)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21.12월) 제정을 통해 도매형 사회투자기관 지정 및 사회투자 모태조합 결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과제 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67조(기금의 사용 등)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육성” 항목 추가

과제 2. 사회적 경제 방식의 연대금융 활성화

- **(관련 현황)** 사회적 경제 조직 간 공제 방식으로 부문, 지역, 업종 단위 자조기금이 성장하고 있고, 기업 뿐 아니라 구성원 및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시민공제를 시도하는 사례 증가
 - **(자조기금)** 한국사회혁신금융, 재단법인 밴드 등 사회적 경제 기업 공제 운용기관 성장, 지역 및 업종 단위 자조기금 조성 사례 증가 (서울 광진구, 충북, 경남, 전북, 대구 동구, 경기도 화성시; 한국사회주택협회,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
 - **(시민공제)** 자활공동체 기반 40여 개 지역별 공제조직 '주민협동회' 성장, 연합회 결성; 2021년 불안정 고용 노동자 공제조직 연합회 '사단법인 풀빵' 설립,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설립; 아이쿱 등 소비생협 생협법 시행령 정비를 통한 시민공제 추진 기반 마련 요구 누적
- **(문제점)** 공제사업을 규율하는 보편적인 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공제 방식의 자조/연대를 추구하는 단위들은 민법에 기반한 비영리 조직,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형태로 사업을 키워 옴
 - 협동조합 기본법과 생협법은 금융과 보험업을 금지. 공제사업은 한정적으로만 허용하거나 행정부처에서 사업을 제한하고 있음
 - 협동조합 기본법: 연합회가 회원 조합을 대상으로만 가능. 조합원 대상 공제사업 불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2년 전 법적으로 공제사업이 가능해졌으나, 주무부처가 하위법령을 정비하지 않아 공제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음
 - 국가공적보험과 민간영리보험이 책임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점점 커지고 있음에도, 행정부처와 주류 경제주체의 반대로 경제적 약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축하려는 안전망 체계인 협동조합 공제를 원천 차단하고 있음.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의 질은 더 낮아지고 양극화 심화
 - 영리 목적이 아닌 시민들의 건강과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이용자 중심의 협동조합 보험, 풀뿌리 기반의 상호부조 공제라는 새로운 사회적 대안 제시 필요
- **(추진 방향)**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참여하는 풀뿌리 자조기금 육성, 근거법 제정 및 시행령 정비를 통한 사회적 경제 방식 공제 활성화, 신탁 등 상호금융 기관의 사회적 금융 참여 장벽 제거

《과제 2-1》 사회적 경제 기업 지역, 업종, 분야별 자조기금 육성

- 사회적 경제 금융서비스를 지원하는 공제조합을 육성하여 민간 자본을 축적하고, 일반 금융기관이 부담하지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조합원 출자금, 정부 출연금 등을 통한 공제기금 조성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타 산업의 공제조합들은 설립 시 정부 출연금과 조합원 출자금으로 기금조성)
 - 국민연금 등의 사회적책임투자 (SRI) 연계, 공익신탁을 통한 자금 조달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 마련
- 사회적 경제를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공제사업을 허용하고, 겸업 허용을 통해 성장동력 제공
 -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개정 등을 통해 공공입찰 시 공제조합의 보증서를 인정하고, 사회적 경제 기업 혹은 종사자 대상으로 손해보험, 생명보험, 퇴직연금 등의 공제상품 취급허용 (타 산업의 경우 개별법을 통해 보증사업, 손해공제 등의 사업 영위)
 - 조성된 기금이 사회적 부동산 개발 및 임대, 도시재생 등 사회혁신 프로젝트에 일정 비율 이상 운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과제 2-2》 노동공제, 자활공제, 생협공제 등 시민공제 활성화

- 협동조합, 생협 공제의 조속한 시행 및 활성화를 통해 시민공제 활성화
 - 협동조합 공제 사업 실질화 및 활성화 : 주무부처의 적극 행정을 통해 협동조합 기본법 제도 정비,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회원(협동조합) 소속 조합원으로 확대, 활성화 지원책 마련
 - 생협 공제 조속한 시행 : 주무부처의 생협법 하위법령 정비 및 조속한 사업 시행
- 노동공제, 공익활동가공제 등 제도화, 지원사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 근로복지기본법 개정, 노동공제 특별법 등 제정을 통한 노동공제 제도화 추진
 - 다양한 공제를 통해 비정형, 비정규, 플랫폼노동 등 국가복지, 기업복지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사회적복지(연대복지금융) 체계 구축, 이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과제 2-3》 신협 등 상호금융 기관의 사회적 금융 참여 장벽 제거

- 신협이 사회적경제조직과 상호협력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 마련
-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자기자본 확대를 통한 자금조달을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신협의 출자 허용

※ 입법 과제

- (과제 2-1)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21.12월) 제정을 통해 '사회연대공제조합'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과제 2-2)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안호영 의원 대표 발의, '21.11월) 처리를 통한 노동공제 법적 근거 마련, 사회안전망으로서 노동공제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노동공제 활성화 특별법」 제정 추진
- (과제 2-3)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 '20.7월) 처리를 통한 신협의 사회적 경제 금융지원에 필요한 사항 규정

과제 3. 공공·민간의 사회투자 참여 촉진

- **(관련 현황)** '18년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이후, 공공의 자금공급은 증가하였으나, 민간의 사회투자 참여 및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등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은 미진한 상태
 - 사회적 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 중개기관 30여 개 활동, '18년 이후 관련 사업 본격화
 - 지자체 사회적경제 기금, 공익재단 사회공헌 자금, 노동계 사회연대기금, 자산 운용에 ESG를 고려해야 공공기관 등 사회투자 시장 성장 전망
- **(문제점)** 최근 2~3년 정책금융과 제도권 금융을 중심으로 사회적 금융 자금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 경제 원리에 충실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공급하는 민간 중개기관들은 성장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주변화될 우려 존재
 - 영미 지역에서 임팩트 투자는 협동조합이나 비영리 조직을 포괄하여 성장과 규모화를 추동하는 사회투자자 자리 잡았지만, 국내에서는 벤처투자의 틀 안에서 해석되면서 주식회사에 대한 지분투자자 협소하게 인식됨
 - 벤처투자의 틀 안에서 임팩트 투자의 외형적 성장이 시작되면서, 사회공헌자금, 비영리재단 자금 등 규모는 작아도 다양한 주체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되던 자금의 공급 채널의 쓸림과 획일화 우려
 - 현재 방식의 자금공급 확대는 사회적 경제 영역 내 부문·지역 간 자금공급 불균형 확대를 낳을 수 있음
- **(추진 방향)**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사회투자조합 결성 허용, 공공기관 보유자금 활용한 사회투자 참여 촉진, 공익재단 등의 벤처자선 방식 사회투자 활성화, 사회투자 참여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과제 3-1》 사회투자조합 결성 허용 등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 사회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중개기관들이 지속가능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운용규모 확대 등 육성 정책 시행
-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 민간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사회적 투자자 개발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금융에 적합한 금융수단 부여
 - 국회에 발의된 '사회적 경제 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통해 사회투자자의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활동 주체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여 정부 활성화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민간 중개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 투자자, 민간/공공 사회적 투자자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공급의 승수효과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

《과제 3-2》 공공기관의 사회투자 참여 촉진

- 공공기관 자금 가운데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자금이 아닌 법정 준비금, 운용상 여유자금 등을 활용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국가재정법에 따라 공공기관 여유자금을 모아 운영하는 '연기금투자풀'에서 일정 비율의 자금은 사회투자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금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 및 규정 개정
-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 후속 과제로 공공기관의 성과평가 기준에 사회투자 참여 비율 반영, 인센티브 부여

《과제 3-3》 벤처자선 방식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한 행정편의 제공

- 공익재단의 투자 또는 출연에 대한 제약을 제한적으로 완화
 - 현재 복지재단은 출연/투자 불가, 재단의 직접 투자에는 5% rule 적용, 출연 시 고유목적 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분류 등 제약이 존재하는데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는 완화가 필요
- 사회적 가치 극대화를 위한 비수익 혹은 손실 고려 투융자 시행이 용이하도록 행정편의 제공
 - 공익재단에서 조건부 탕감 부채 (forgivable loan) 등 벤처자선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촉진
 - 사회투자에 참여한 결과 사후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손실분에 대한 기부금 처리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과제 3-4》 사회투자 참여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 인증 사회적기업에 투자한 경우에도 벤처기업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민간 투자 활성화
 -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 (최소 3년 보유)에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짐
 - 벤처기업 직접투자(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시, 연 3000만원까지 100%, 연 3000~5000만 원 이하 70%, 연 5000만원 초과는 30%까지. 벤처펀드(간접투자)는 출자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

※ 입법 과제

- (과제 3-1)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21.12월) 제정을 통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사회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규정
- (과제 3-2) 기재부 시행령 '기금여유자금의 통합운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국회 계류 중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및 관련 후속 시행령 등에서 공공기관의 사회투자 참여 인센티브 제공 (성과평가 항목 반영 등)
- (과제 3-3)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지분의 5%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적용 예외 등 관련 법 개정
- (과제 3-4) 「조세특례제한법」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정의하는 사회적기업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

과제 4. 사회적 금융 혁신 성장 지원

《과제 4-1》 사회성과보상사업 관련 법 제정, 사회성과보상기금 조성

- **(현황)** 사회환경·교육·복지 등 공익을 위한 예산수요가 증가하고 코로나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지출도 급증하고 있으나, 세수와 정부의 예산지출에는 한계가 있음
 - 그동안 정부는 정책의 성과와 무관하게 추진과정과 실행비용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실패한 사업에도 세금을 사용하여 예산을 낭비해 왔음
 - 또한 정부는 결과와 무관하게 실행과정에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실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에는 관심을 갖지 못함
- **(개선방향)** 민간의 투자와 협력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성과목표 달성 시에만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확산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하여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정부의 정책 실패 위험 없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더 많은 사회문제에 대응
 - 사회성과보상사업으로 본질적인 성과달성에 집중하는 정부를 만들고 관료주의와 위험 회피적인 행정 시스템을 개선
- **(정책제안 1)**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국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확산되도록 중앙정부의 지원체계를 마련
- **(정책제안 2)** 사회성과보상기금을 설치하여 지자체의 정책 추진을 돕고, 사업성과 달성 시 성과보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성과보상기금으로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대응할 수 있으며, 지자체 단독으로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부담을 줄여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

《과제 4-2》 소셜 택소노미 제정으로 ESG 투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력 제고

- **(배경)** 국내에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는 동안, EU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주류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데, 이런 경향은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에게는 기회이자 위기로 작용. EU에서는 ESG 공시 의무화를 위한 인프라로 그린 택소노미, 소셜 택소노미 발표
- **(정책 현황)** 국내에서는 그린 택소노미의 일환으로 '21년 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정립해 발표. EU 차원에서는 그린 택소노미에 이어 '21.7월 소셜 택소노미 초안 발표 (인간다운 삶을 위한 경제적 기준 향상, 양질의 일자리, 소비자 이익,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등)
- **(추진 방향)** ESG 금융의 임팩트 위상을 가능성을 억제하고, 사회적 이슈 해결을 위한 소셜 택소노미 제정 추진. 이를 통해 ESG와 사회투자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ESG 투자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가치 창출력 제고

《과제 4-3》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을 전담할 「사회적금융진흥원」 설립

- **(배경)**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기 제시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집행 단위가 필요함. 기존 공공기관으로는 대응되지 않는 정책 수요를 해소할 수 있는 접근 필요
- **(정책 현황)** '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정책」은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방식으로 정착되었으나, 소관 부서가 서민금융과로 되어 있고 담당 인력 부족으로 현장에 밀착된 정책 발굴 및 추진에 한계가 있음.
- **(사회적 경제 자금 공급)** '18년 이후 금융위원회는 연 3회 「사회적 금융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금융 기관과 기성 금융권을 통한 사회적 경제 기업 자금 공급에 주력하고 있으나, 자금공급 사각지대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장기적으로 자금공급 방식이 특정 유형 기업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임팩트 창출력이 저하될 우려 존재
- **(사회연대공제)** 생협공제, 노동공제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추진하는 공제사업의 경우, 개별법에 기반해 설립된 공제회들과 달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해 운영할 수 있고, 연합회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개방형 체제를 상정하고 있음. 이런 방식의 사업은 주무부처의 전문성 있는 관리/감독 및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시행할 수 있는데 현재 각 사업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전문성 있는 전담 조직이 설립/지정된다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추진 방향)** 사회적 경제 자금공급 활성화, 민간 중개기관 육성, 생협공제/노동공제 육성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주민참여형 풀뿌리 전환사업에 대한 사회투자 등을 담당하는 「사회적금융진흥원」을 금융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설치

※ 입법 과제

- **(과제 4-1)**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대표 발의안,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안,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안) 처리
- **(과제 4-2)** 향후 추진될 ESG 법제화 과정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
- **(과제 4-3)**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사회적 경제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민형배 의원 대표 발의, '21.12월) 검토 및 처리 과정에서 관련 내용 반영

[붙임] ‘사회적금융포럼’ 현황

- 사회적 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24개 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임의 단체)
- 2020년 3월 21대 총선 사회적금융 관련 공약제안 모임으로 출발, 2020년 10월 구조를 갖추고 출범
- 자체 조사 통해 「2020 사회적 금융 서베이」 발행, 비전 포럼, 정책 토론회, 세미나 등 개최

(*가나다순)

연번	기관명	대표자	포럼 참여	비고
1	(주)FK임팩트금융	김민수	김민수 대표	
2	(주)MYSC 엠와이소셜컴퍼니	김정태	강신일 책임	
3	(주)경남사회가치금융대부	김진수	정원각 이사	기획위원
4	(사)나눔과미래	송경용	이제원 실장	
5	동작신협	안재남	김현숙 전무	기획위원
6	(주)디쓰리쥬빌리파트너스	이덕준	이덕준 대표	
7	(주)비플러스	박기범	박기범 대표	
8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김성수	안준상 본부장	
9	(사)피피엘	김동호	서경준 총장	
10	(주)소풍벤처스	한상엽	한상엽 대표	
11	(주)아크임팩트자산운용	이철영	임창규 전무	
12	(주)오마이컴퍼니	성진경	성진경 대표	기획위원
13	(주)임팩트스퀘어	도현명	도현명 대표	기획위원, 간사단체
14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사협 우리함께	유유미	유유미 회장	
15	재단법인 밴드	하정은	하정은 대표	
16	주민신협	이현배	이현배 이사장	
17	(주)크레비스파트너스	김재현	김재현 대표	
18	팬임팩트코리아 유한책임회사	곽제훈	곽제훈 대표	기획위원
19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이선우	문성환 이사	기획위원
20	(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송경용	박학양 총장	기획위원, 간사단체
21	(재)한국사회투자	이종익	이종익 대표	
22	한국사회혁신금융(주)	이상진	이상진 대표	기획위원, 간사단체
23	(주)한국사회혁신금융	황선희	황선희 대표	
24	(재)함께일하는재단	이세중	이원태 부장	